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7월 29일, 김남희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6년 7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8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8.2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8.31.) 상정 · 축조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9.14.) 상정 ·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9.16.) 상정 · 축조심사

제5차 전체회의(2026.9.17.) 상정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남희의원)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노인학대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의 사건을 수사한 후 범죄 혐의 유무와 무관하게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참고로,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② 그 밖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등의 과정을 거치며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들 사건의 실체를 보다 충실하게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성폭력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한다면,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 외에도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는 등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됨에 따라 사건의 실체 규명과 피해자의 권리 보호 측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대체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세 차례에 걸쳐 축조심사를 진행하였고, 적용례 수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